

심사보고서

2024. 6. 11.

행정재경위원회

의안 번호	366
----------	-----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5. 30. 이동호 의원 대표발의(11명 발의)

나. 상정의결

-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(2024. 6. 11.)
“원안가결”

2. 제안설명 요지(대표발의자 : 이동호)

가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」의 개정으로 상임위원회 수가 증가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(안 제2조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구경남)

- 이 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상임위원회 수가 증가하므로,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 수도 확대·조정하고자 이동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임.
- 2023. 9. 27. 「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」를 일부개정하여 제9대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된 날부터는 상임위원회를 운영위원회, 행정안전위원회, 경제도시위원회, 복지문화위원회로 구성이 변경되었음.
- 안 제2조(정수)는 「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」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는 것임. 결산검사위원을 1명을 증원하는 것은 의원을 최대 3명까지 위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바 상임위원 수와 결산검사 위원 정수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, 전문가보다 의원을 추가한다면 결산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을 살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.
- 이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수가 2024년 7월 이후 1개 증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수를 6명에서 9명으로 확대되면 의원도 1명 추가할 수 있는 바 결산검사위원 1명을 추가가 결산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되도록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없음”

5. 토론 요지 : “없음”

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

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6명”을 “9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